

요한 사항으로서,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(2) 환경부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도록 함.

(3) 법적 근거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되어 그 취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(법 제10조 제4항 신설)

(1)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는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, 그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(2)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(3)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동 센터의 사업수행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

2007년 1월 3일

국무총리 한명숙

국무위원  
노동부장관 이상수

●법률 제8217호

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적기업"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2. "취약계층"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

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. “사회서비스”라 함은 교육·보건·사회복지·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연계기업”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,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·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연계지방자치단체”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제4조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)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
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육성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
2.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
3.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
4.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)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

- 2.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
- 3.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)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1. 「민법」상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
- 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

동을 수행할 것

3.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

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6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
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「상법」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)

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
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정관 등)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

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(이하 “정관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사업내용
- 3. 명칭
-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5.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- 6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- 7.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
- 8.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- 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(「상법」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)

10.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영지원 등)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

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비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①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공공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공공기관의 장은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
제13조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
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노동부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경비·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노동부장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연계기업의 책임 한계)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6조(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7조(보고 등)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

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·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제18조(인증의 취소)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
2.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
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1.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1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·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
- 3.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

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**부 칙**

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◇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유**

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**◇주요내용**

가. 사회적기업의 정의(법 제2조제1호)

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

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함.

#### 나.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(법 제4조)

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.

#### 다.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(법 제5조)

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
#### 라. 사회적기업의 인증(법 제7조 및 제8조)

(1)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,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
(2)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,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,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,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.

#### 마.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(법 제10조·제11조·제13조 및 제14조)

(1)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(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.

(3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

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(4)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경비·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바. 연계기업(법 제15조 및 제16조)

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

**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노 무 현 인**

**2007년 1 월 3 일**

**국 무 총 리 한 명 속**

**국 무 위 원 이 상 수  
노동부장관**

**◎법률 제8218호**

**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**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.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,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
2. 서비스업·제조업·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,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직자명부에